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6

발의연월일: 2020. 6. 9.

발 의 자:김원이·강훈식·기동민

김두관 · 신정훈 · 김수흥

민형배 • 윤준병 • 이정문

임호선 · 조오섭 · 천준호

최혜영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%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최근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21%에서 25%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자율 재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제2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8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2항 중 "100분의 21"을 "100분의 25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) 제69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납부 또는 환 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과세표준 및 세액) ① (생	제69조(과세표준 및 세액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	②
의 과세표준에 <u>100분의 21</u> 을	<u>100분의 25</u>
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	
다.	